# 삼청각 취한당 대관 규정(안)

2023. 07.

삼청각
SamcheongGak

# 삼청각 취한당 대관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청각(이하 "운영사")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삼청각 취한당(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시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예술문화 진흥 ·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대관'이라 함은 전시를 위하여 전시관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정에 따른 대관 절차를 거쳐 운영사로부터 대관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① 운영사는 전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취한당(1전시실 77제곱미터)
2. 취한당(2전시실 26제곱미터)

② 제1항의 대관시설은 시설의 보수·안전·기타 사유로 운영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 대관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1. 정기대관은 해당년도의 전시 일정을 확정하여 운영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2.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잔여일정 발생 시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② 운영사는 보안유지 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관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대관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5조(대관용도) 운영사는 비영리목적의 전시용도로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의 보급 및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및 서울시 공공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의 경우 전시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제6조(대관 신청 제한)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접수받지 않거나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법의 소지가 있는 활동내용으로 삼청각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삼청각 시설 및 부대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삼청각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상업적 목적(상품판매 · 홍보, 개인의 영리를 목적 및 상업활동을 위한 전시), 특정한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의도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지역 · 생활 · 문화예술 등의 전시영역이 아닌 일반 기념전시(창립기념일 축하전시 등)의 경우

④ 삼청각의 공공성과 품위 손상 및 왜곡시킬 우려가 발생할 경우

1. 영화, 드라마, 광고, 예능프로그램, 인터뷰 등 촬영을 위한 전시대관의 경우

2. 상품, 유료 서비스의 홍보와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⑤ 건물 및 부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

1. 음식물 조리 등 화기사용의 경우

2. 건물 및 부속 시설물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등

⑥ 소음, 소란, 선동 등으로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 및 관람에 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경우

1. 대규모 인원 집객이 예상되는 전시 목적의 경우

2. 소음이 발생되는 행사 및 공연을 동반하여 전시하는 경우 등

⑦ 기타 삼청각의 운영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전시관 운영위원회) ① 대관자 선정 및 대관 허가 · 취소, 대관료 감면 등의 심의를 위해 전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전시관 운영위원회는 외부전문가 1인, 서울특별시 1인, 운영사 1인으로 구성하되, 심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제 2 장  대관 허가

제8조(대관허가) ① 전시관을 대관하려는 자는 대관 공모기간내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운영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사는 대관(변경)허가신청서 접수 시 대관목적, 행사 내용 소개(전시명, 주제, 세부계획 등), 공간연출, 홍보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 제출을 대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대관기간은 전시 및 전시물 설치를 위한 준비 및 철수기간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④ 대관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된 대관 만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대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대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운영사는 대관(변경)허가신청서에 대하여 대관심의 등 심사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승인서를 통지한다.

⑥ 운영사는 대관허가를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⑦ 대관신청자가 제1항의 대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시관 대관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대관심의) 운영사는 대관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삼청각 취한당 대관규정」에 따라 전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대관 계약의 체결) 대관허가를 통보받은 자는 신청자 개인 및 단체의 사용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운영사가 정한 별도 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관허가 취소 등) ① 전시관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허가 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할 때
2. 대관규정과 유의사항 등을 위반한 때
3. 종교적, 정치적 내용이 담긴 행사를 할 때
4.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위반하였을 때

② 전시관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관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향후

2년간의 대관을 금지할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규정 및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자
3. 대관 신청 시 허위로 작성하여 대관 계약이 취소된 자
4. 기타 전시관 운영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2조(대관료) 대관료는 공공요금(전기 · 도시가스 · 수도)을 포함하여 1일 1만원(부가세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대관료 납부) ① 대관료는 선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한다.

② 대관료의 선금(정기대관, 수시대관)은 대관료 총액의 50%로 한다.

③ 대관료의 선금과 잔금은 운영사가 정한 기간 내(대관허가승인서 기준)에 지정한 입금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④ 대관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운영사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대관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사는 대관자로부터 납입기일을 명시한 대관자의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납입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대관기간이 연장되어 운영사로부터 대관 허가(변경) 승인를 얻은 경우 추가 대관료는 별도 지정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추가 대관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운영사는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⑥ 대관료 미납으로 인한 운영사의 대관승인 취소 및 대관시설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로 대관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운영사는 대관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운영사는 시설의 훼손 및 파손, 추가 대관료 발생, 원상복구비용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관자에게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금은 운영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대관료 반환) ① 대관자는 대관허가 후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사는 대관을 취소 처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관자에게 반환한다.

1.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100% 반환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운영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100% 반환

3. 대관자가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대관 취소를 신청하여 운영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 납부한 대관료의 100% 반환

4. 대관자가 사용예정일 2일 이전에 대관 취소를 신청하여 운영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 납부한 대관료의 50% 반환

5. 위 1호에서 4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대관료 반환금 없음.

제15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허가 후 공동주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시간) ① 대관 가능시간은 전시관 개관시간인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사가 인정하는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별도의 전시관 휴관 일정은 없으나 대관자가 전시 준비 및 철거를 위하여 휴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3장 대관자 준수사항

제17조(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 사용
2. 대관 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 사용
3. 대관 진행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 설치, 철거 및 부속 장비 사용 등에 따른 사전협의
4. 대관 기간 중 관람객 및 시설물의 안전 ·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시관이 시설물 유지 · 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② 대관자는 대관시 진행 내용 일체를 운영사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가 전시관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방염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대관자는 전시관 사용 시 공간 내 · 외부에 붙일 각종 광고,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으나, 삼청각 내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포스터 · 현수막 · 배너 게시, 리플렛 · 전단 비치, 물품 진열, 판매대 설치 등의 사항들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당자가 지정하는 공간에서만 허락된다. 그 밖의 사전 협의되지 않은 홍보물이나 홍보행위는 담당자의 판단으로 철거 및 제재 할 수 있다.

⑥ 대관 전시 관련 홍보물의 설치 · 철거 · 운영의 책임은 대관자에게 귀속된다.

⑦ 공간에 화환 등을 설치할 경우 대관이 끝난 후 대관자가 즉시 철거해야 하며, 비용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가 부담한다.

⑧ 모든 공간에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며, 대관의 목적 및 운영에 따라 간단한 다과(간식류, 냄새가 심한 음식류 제외) 반입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 및 다과 섭취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직접 처리해야 한다.

⑨ 삼청각의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으로서(마당 및 입구 포함) 흡연할 수 없으며, 공간 내에서의 흡연이 적발될 경우 즉시 퇴실조치할 수 있다.

⑩ 한옥 공간의 특성상, 대관자가 대관을 하였더라도 모든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다른 관람객이나 인근 주민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는 금한다.

⑪ 공간 사용은 사전 신청 및 협의가 된 공간에 한하며, 협의 없이 부속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 시설과 설비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 관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

며, 특히 관람객의 안전사고, 화재 예방 및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명 및 시설, 설비에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전시관이 정하는 대관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운영사는 대관기간 중(준비 및 마무리 기간 포함) 전시관 시설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대관자의 시설물 설치) ①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특별한 장치 또는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운영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는 대관자 부담으로 한다. 특히 내외부 공용공간의 설치물 및 사용에 대해서는 운영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대관자가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완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물을 운영사가 직접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④ 운영사가 철거할 시 대관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여도 운영사는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입장제한) 운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관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의심자 포함)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안전 유지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1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와 운영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약)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1]

# 삼청각 취한당 대관료(제10조 관련)

## 1. 기본대관료

| 전시실 | 공간명 | 공간면적 | 대관료 |
|---|---|---|---|
| 취한당 | 전시실 1 | 77m² | 1일 1만원<br>(부가세 포함) |
| | 전시실 2 | 26m² | |

※ 대관료는 전기료,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을 포함함

※ 전시실 2실 가운데 1개실만 사용하더라도 대관료는 1일 1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 2. 대관료 감면율 적용기준

| 항목 | 세부내용 | 감면율 |
|---|---|---|
| 서울시, 운영사 주최 | ◦ 서울특별시 또는 운영사가 직접 혹은 공동주최 · 주관 하는 경우 | 100% |
| | ◦ 서울특별시 또는 운영사가 후원하는 경우 | 50% |
| 공공기관 주최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 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의 주최·주관하는 경우 | 50% |
| 기타 | ◦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전시의 성격, 공간사용의 범위, 광고 및 홍보 정도, 기부 등을 감안하여 전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관료 감면 | 별도협의 |

[별표2]

## 대관시설 사용 등에 대한 사전 협의(제15조 제2항 관련)

| 구분 | 사전 협의사항 |
|---|---|
| 건축시설 | ■ 구조물 설치 시 적재하중의 적정성 협의<br>■ 시설물 마감재 사전 보강 등<br>■ 장비 및 중계차량 임시정차 허용구간 지정 등<br>■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 |
| 전기·음향·영상장비 | ■ 내 · 외부행사 시의 장비설치 등에 대한 협의 |
| 안전 및 피난요령 | ■ 행사 준비 시 또는 행사 시 안전관리 사항<br>■ 재난 및 화재 시 대피요령 및 대피장소(피난동선)<br>■ 소방기구 배치 장소 및 사용 요령 등 |
| 전시장 청소 | ■ 행사 준공청소 시 관리과 공동 검수사항<br>■ 쓰레기 처리 방안 및 쓰레기통 사용 등 |
| 기타 | ■ 주차장 사용에 대한 협의<br>■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별표3]

## 방염 대상 물품(제15조 제3항 관련)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
※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